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7

식물위생증명 시스템 Phytosanitary certification system

(2011)

FAO/IPPC 사무국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FAO. 2011. *Phytosanitary certification system*.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7.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2011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work)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시사(suggestion)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산물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물은 FAO 웹사이트 (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PS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3 (한국어 번역)"

"© FAO, 1995-2011 (영문판)"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1994-05 CEPM-1은 주제를 추가 - 수출 증명 시스템 (1994-002)

1995 전문가작업단이 초안 작성

1995-05 CEPM-2이 초안을 수정하고 회원국 의견수렴 승인

1995 의견수렴 실시

1995-05 CEPM-3가 채택을 위하여 초안 수정

ISPM 7. 1997. 수출 증명 시스템. 로마, IPPC, FAO

2006-04 CPM-1은 *ISPM 7 개정*을 주제로 추가 (2006-034)

2006-11 SC은 작업지시서 38 *ISPM 7과 12 개정* 작업지시서 승인

2008-02 전문가작업단이 기준 수정

2009-06 SC는 기준을 수정하고 회원국 의견수렴 승인

2010-02 의견수렴 실시

2010-05 SC-7이 기준 수정

2010-11 SC는 채택을 위하여 기준을 수정

2011-03 CPM-6은 수정된 기준을 채택

ISPM 7. 2011. 식물위생 증명 시스템. 로마, IPPC 사무국, FAO

2015-03 CPM-10 “식물위생 상태” 관련 소소한 수정을 인지

2015-06 사무국은 소소한 수정을 반영하고 CPM-10(2015)에서 결정된
기준 절차 폐지에 따라 기준을 변경(reformatted)함

출간 이력은 최종으로 2015-12에 수정됨

차례

채택

서론

범위

참고문헌

정의

요건의 개요

요건

1. 법적 권한
2. NPPO(국가식물보호기관)의 책임
 - 2.1 행정적 책임
 - 2.2 운영적 책임
3. 자원과 인프라 구조
 - 3.1 직원
 - 3.2 식물위생 수입요건 정보
 - 3.3 규제병해충의 기술적 정보
 - 3.4 재료와 시설
4. 문서화
 - 4.1 식물위생증명서들
 - 4.2 절차의 문서화
 - 4.3 기록 보관
5. 의사소통
 - 5.1 수출국 내의 의사소통
 - 5.2 NPPOs 간의 의사소통
6. 식물위생증명 시스템 검토

부록 1: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적 직원(public officer)에 대한 지침

채택

이 기준은 1997년 11월 29차 FAO 총회에서 수출 증명 시스템으로 채택되었다. 이 기준의 1차 개정을 2011년 3월 CPM-6에서 현재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서론

범위

본 기준은 국가식물보호기구(NPPOs)가 설정한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의 요건을 포함하고 구성요건을 설명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수출 식물위생증명서와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의 준비와 발급은 ISPM 12(식물위생증명서들)에 설명되어 있다.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은 국제식물위생 포탈(IPP) 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에서 찾을 수 있다.

IPPC 사무국. 1997. 국제식물보호협약. 로마, IPPC, FAO.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들의 정의는 ISPM 5(식물위생 용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요건의 개요

식물위생증명서들은 해당 화물이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어떤 NPPO에 보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화물에 대하여 발급된다.

1 IPPC는 수출 목적으로는 “식물위생증명서”, 재수출 목적으로는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라고 부른다. 이 기준에서 이들 용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와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사용된다. “식물위생증명서들 (복수)”는 이 두 가지의 증명서를 포함할 때 사용된다.

수출국의 NPPO는 식물위생증명을 수행하는 고유의 권한이 있으며, 법적, 행정적 요건을 취급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NPPO는, 식물,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의 시료채취 및 검사, 병해충의 검출 및 동정; 작물의 예찰; 소독처리 실시; 기록 유지 시스템 유지를 포함하는 운영적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출국의 NPPO는 필요한 능력과 기술적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NPPO에서 책임지는 경우, 허가받은(authorized) 비정부 직원도 특정한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수입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의 공적인 정보는 수출국의 NPPO 직원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시료채취, 검사, 정밀검사, 소독처리와 더불어 수입국의 규제병해충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 또한 식물위생증명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수출국 NPPO는 관련된 증명 절차를 문서화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절차를 위한 지침과 설명(instruction)이 있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을 발급에 이르는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NPPOs는 접촉창구(contact points)를 통하여 공적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한다. 식물위생 수입요건과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는 소통되어야 한다.

요건

IPPC V.1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각 계약당사국은, 수출되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 규제물품과 화물이 기술된 증명 진술문에 일치함을 보증할 목적으로 식물위생증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국들은 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 규제물품들이 수입 계약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규제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식물위생 증명서들을 발급하기 위한 시스템은 법적 권한, 행정적과 운영적 책임, 자원과 인프라 구조, 문서화, 의사소통과 시스템 점검의 요인들을 포함한다.

1. 법적 권한

NPPO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법으로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된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을 수행하고, 개발하고 유지하는 고유의 권한을 가져야 하며, IPPC IV.2(a)에 따라서 이 권한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NPPO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화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2. NPPO 책임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하여, NPPO는 다음의 행정적, 운영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2.1 행정적 책임

NPPO는 식물위생증명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요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관리 시스템을 가져야 하며,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NPPO 내 직원 또는 사무실의 확인(identify)
- 식물위생증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의 의무와 의사소통 창구의 확인
- 적합한 자격요건과 능력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거나, 인증
- 적절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
- 적절한 직원과 자원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

2.2 운영적 책임

NPPO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식물위생증명에 필요한 식물위생 수입요건 관련 정보를 문서화 하고 유지하며 직원들에게 적절한 작업 교육을 제공
- 식물위생증명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식물,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의 검사, 시료채취, 정밀검사를 수행

- 병해충 검출 및 동정
- 식물,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을 구분
- 필요한 식물위생 소독처리를 수행, 감독 또는 감사
- 식물위생증명서들에 기술된 식물위생 수입요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방제 활동을 수행
- 식물위생증명서들을 완성하고 발급
- 적정한 식물위생 절차가 설정되고 바르게 실행된 것을 확인
- 위반사항 통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적정할 경우)
-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운영 설명 생산
-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복사본을 연대별로 정리
-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점검
- 이해 충돌, 위조 발급,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사용과 같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가능한 정도까지 안전장치 실행
- 직원에 대한 훈련 실시
- 인증 받은 직원의 자격 확인
- 수출 전 식물위생증명 후 화물에 대한 식물위생 보안을 적절한 절차를 통한 확인

3. 자원과 인프라 구조

3.1 직원

수출국 NPPO는, 식물위생증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무과 책임에 적당한 기술적 자격요건과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거나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직원들을 2.2항에서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직원들은 기술적 자격과 능력, 전문성과 훈련에 더하여서, 직원들은 식물위생증명 결과에 대한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을 발급하는 공적 직원에 대한 지침은 부록 1[개발 중이며 필요시 수정될 것임]에 서술되어 있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발급을 제외하고, 비정부 직원은 특정한 증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NPPO에 의해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NPPO에 책임이 있다. 공적인 기능 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과 동등한 제약과 의무를 갖게 되며 결과에 영향할 수도 있는 이해(금전적 또는 다른) 충돌이 없어야 한다.

3.2 식물위생 수입요건 정보

식물위생증명은 수입국으로부터의 공식 정보에 근거 해야 한다. 수출국의 NPPO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 수입국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관련된 최근 공식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IPPC VII.2(b), VII.2(d)과 VII.2(i)와 ISPM 20(설정된 규제에 대한 전파의 요소들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 지침))에 따라 접근 가능해야 한다.

3.3 규제병해충에 대한 기술적 정보

식물위생증명에 참여하는 직원은 다음을 포함한 수입국의 규제병해충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 수출국 내 존재와 분포
- 이들 병해충의 생물적 특징, 예찰, 검출과 동정
- 적절한 경우 소독처리를 포함하는 병해충 방제 방법

3.4 재료와 시설

NPPO는 시료채취, 검사, 정밀검사, 소독처리, 화물 확인 및 다른 식물위생 증명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 재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문서화

NPPO는 적용된 관련 절차를 문서화하고 기록을 유지(문서화 보관 및 검색 (retrieval))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식물위생증명서들, 관련 화물과 그 일부들(parts)의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 식물위생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1 식물위생증명서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IPPC에 기술된 식물위생증명 절차가 수행된 것에 대한 문서 확인이다. IPPC 부속서에 기술된 식물위생증명서들의 견본이 사용되어야 한다. 상세한 지침은 ISPM 12에서 제공된다.

4.2 절차의 문서화

NPPO는, 적정할 경우,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식물위생증명 시스템 절차를 다루는 지침 문서와 작업 교육을 유지해야 한다:

- 검사, 시료 채취, 정밀검사, 소독처리와 화물의 구분과 보존성 확인을 포함하는 ISPM 12에서 기술된 식물위생증명서들과 관련된 특정 활동
- 공식 봉인과 표식에 대한 보안성 유지
- 화물의 구분(identification)과 (적정할 경우) 수출 전 생산, 취급과 운송의 모든 절차에 대한 식물위생 보안성을 포함하는 화물의 추적성 (traceability) 확인
- 수입국의 NPPO에서 요청할 경우,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 보고를 포함 (이 절차는 ISPM 13(위반사항 통보 및 긴급활동 지침)에 부합해야 함) 하는 수입국 NPPO의 위반사항 통보에 대한 조사
- 위반사항 통보 이외의 방법으로 NPPO가 인지하게 된 경우, 효력이 없거나 위조된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조사

추가로, NPPO는 이해당사자들(예; 생산자, 브로커, 무역상)과 협력을 위한 식물위생증명과 관련된 문서화된 절차를 가질 수도 있다.

4.3 기록 보관

일반적으로 기록은 식물위생증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유지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사본은 NPPO에 의해, 확인과 추적을 위하여 적정한 기간(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이 발급된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수행한 검사, 정밀검사, 소독처리 또는 다른 확인
- 채취한 시료
-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이름
- 활동이 수행된 날짜
- 얻어진 결과

기록은 적정한 기간(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고, NPPO는 이 기록을 검색(retrieve)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의 표준화된 문서화를 위하여 안전한 전자 보관 및 검색 시스템의 사용이 권장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을 발급되지 않은 불합격 화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5. 의사소통

5.1 수출국 내의 의사소통

NPPO는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 생산자, 브로커, 수출자와 다른 이해당사자와 같은 산업체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식물위생 수입요건
- 병해충 상황과 지리적 분포
- 운영 절차

5.2 NPPOs 간의 의사소통

IPPC VIII.2에 따라:

각 계약당사국은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위한 접촉 창구를 지정해야 한다.

공적인 의사소통은 접촉 창구 간에 발송, 수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보나 활동(예; 위반사항 통보)에 대하여 NPPO는 대체 접촉 창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수출국 NPPO에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출국에 의한 요청에 답변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수입국, 가능하면 IPPC VII.2(b)에 의한 접촉 창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식물 보호기구(RPPOs) 또는 국제식물위생 포털(IPP)(<https://www.ippc.int>)을 통하여 제공될 수도 있다. NPPOs는 공적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RPPOs 또는 IPP에 FAO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가급적이면 영어로,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수출국 NPPO는 자국의 수출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요건 변경에 대하여 알려주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수출국 NPPO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명확히 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국 IPPC 접촉 창구와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식물위생증명 후, 수출국 NPPO가 수출된 화물이 수입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수입국의 IPPC 접촉 창구 또는 지정된 대체 접촉 창구는 가능한 빨리 통보를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ISPM 13이 적용된다.

6. 식물위생증명 시스템 검토

NPPO는 정기적으로 수출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의 모든 요건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을 해야 한다.

이 부록은 참고 목적일 뿐이며 이 기준을 규정하는 부분은 아니다.

부록 1: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적 직원에 대한 지침